

## 2.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규정

가. 전자금융감독규정 (선불업 등록면제 금액 설정)

나.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(소액후불결제 적합성 원칙 적용시 자체 기준 적용)

## 2.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규정\*

## 가. 전자금융감독규정 (2024/9/10 개정 · 2024/9/15 시행)

## 1) 개정 이유

- 개정 「전자금융거래법」(법률 제19734호, 2023. 9. 14, 일부개정) 및 동 법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법령 개정 사항을 구체화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를 보호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

## 2) 주요 내용

## □ 선불업 등록면제 금액 설정(제42조)

- 개정법상 선불업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위임해 시행령에서 금액 기준을 정한 바, 해당 금액 산정기준 설정

## □ 선불업 등록절차 정비(제48조)

- 개정법에 따라 선불업 등록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, 선불업 등록절차 정비

## □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 세부 내용(제56조의3, 제56조의4)

- 개정법상 선불업자에게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을 받아 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, 승인신청서, 외부평가위원회 구성 등 관련 세부 내용 규정

## □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세부 내용 규정(제56조의5, 제56조의6, 제56조의7)

- 시행령에서 규정한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총제공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이미 부여한 한도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, 경영 건전성 관리의 세부 기준, 제공 가능한 연체 정보의 범위와 같은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사항 규정

\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## 나.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(2024/9/9 개정 · 2024/9/15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「전자금융거래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 금융상품 성격을 가지는 소액후불결제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 금융상품 판매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- 소액후불결제 적합성 원칙 적용시 자체 기준을 적용(제10조 제3항 제1호의2)
  - 적합성 원칙 적용시 금소법령에 규정된 일련의 기준이 아니라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소액후불결제를 추가
- 전자금융거래법령상 소액후불결제 관련 설명의무 사항을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설명의무 대상으로 추가(제12조 제5항 제3호)
  - 구매가능한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상 설명의무가 있는 항목들을 금소법상 설명의무 대상으로도 추가
- 청약철회 적용대상에서 소액후불결제는 제외(제30조 제3항 제3호)
-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등 의무 대상에서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 겸영 전금업자는 제외(별표2 비고 제1호 마목 및 제2호 가목)
  - 소액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는 전자금융업자 중 전년 자산 총액 5조원 미만인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, 준법감시인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임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함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